

■ **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2. 1. 4.>**

별정우체국에 대한 교부물품(제19조제1항관련)

1. 각종 기관도장
2. 각종 저울
3. 우체통
4. 각종 낱싸도장 및 활자
5. 금액기 및 지폐계수기(지폐 세는 기기)
6. 집배업무 관련 물품
7. 자동차(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)
8. 우편업무 관련 회선·단말기·우편물 운반기구 및 장치(부대시설을 포함한다)
9. 예금·보험업무 관련 회선·단말기 및 현금입출금기(부대시설을 포함한다)
10.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온풍기·냉방기 및 간판류(부대시설을 포함한다)
11. 복사기·복합기 및 팩스
12. 각종 서식류
13.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물품